



---

제24회 광안리어방축제 어방민속마을 조성 및 운영 대행 용역

## 과 업 지 시 서

---



어방민속마을 시설물 조성 및 운영

---

**수영구축제위원회**

## 1 축제개요

- 사업명 : 제24회 광안리어방축제
- 축제기간 : 2026. 6. 12.(금) ~ 6. 14.(일) (예정)
  - ※ 천재지변 및 국가적 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변동가능
- 장소 : 광안리해변 및 수영사적공원 일원
- 주최/주관 : 수영구/수영구축제위원회
- 주요내용 : 뮤지컬 '어방' , 어방민속마을 등 44여종 프로그램

## 2 과업개요

- 사업명: 『제24회 광안리어방축제』 어방민속마을 조성 및 운영 대행 용역
- 사업기간: 계약일 ~ 정산 완료시까지
  - 축제기간: 2026. 6. 12.(금) ~ 6. 14.(일) (예정) ※3일간
  - ※ 천재지변 및 국가적 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변동가능
  - 축제장소: 광안리해변 및 수영사적공원 일원
  - 대행내용: 어방민속마을 시설물 조성 및 운영
- 사업비: 금220백만원(금이억이천만원), 부가가치세, 대행료 일체 포함
- 어방민속마을 운영 프로그램(안) \* 운영단체와의 협의 필요

구분	프로그램명		
공연프로그램 (수영성 앞)	수문장 교대식, 수영성 민속대결, 어방마당극 공연, 어방EDM파티		
체험프로그램 (부스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옥성골의 괴소문 (공포체험)</li><li>· 보리전 옥사</li><li>· 좌수영 갑방</li><li>· 어방통보환전소(2개소)</li><li>· 새미 우리옷</li><li>· 배산고미술</li><li>· 어방주막(2개소)</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어방사진관</li><li>· 수상한 작명소</li><li>· 광안고을 야바위꾼</li><li>· 무기전시관</li><li>· 백산 수군무기전시관</li><li>· 어구정 활쏘기</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강태공네 둑단배</li><li>· 관운당</li><li>· 어방도자기(물레체험)</li><li>· 좌수영 오일장</li><li>· 조청유과, 목공예, 한지공방, 짚공예, 전통등만들기)</li></ul>

## 3 과업범위

- 어방민속마을 조성(시설물 제작·설치, 공간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행사장 안전대책, 청소, 재해(우천, 강풍 등) 발생 시 대책에 관한 사항
- 기타 어방민속마을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발주처와 협의한 내용

## 4 과업 내용

### 1. 과업 주요내용

분야	주요사항
어방민속마을	가. 수영성(성곽포함) 설치 나. 옥성골의 괴소문(공포체험) 설치·운영
시설물	다. 민속마을구성(기와·초가부스), 마을 외부(초가부스 2동, 평상6개 포함)
조성·운영	라. 기타시설(쉼터, 차양막, 팔각무대, 마을외벽, 전통시설물, 난전 등) 마. 어방민속마을 내 체험·전시부스 및 프로그램 인력배치·운영·관리 등

### 2. 과업 세부내용

#### 가. 일반사항

- 설치장소 :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을 중심으로 모래사장에 구성
- 추진방향
  - ▷ 조선시대 수영지방에 온 듯 전통어촌민속마을과 경상좌수영성의 수군병영, 어촌의 어민 생활상 등을 재현하여 축제의 주제성을 부각
  - ▷ 어방민속마을에서 공연과 부스별 체험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시설물 설치·운영
  - ▷ 테마거리에서 바다를 바라볼 때 마을이 보이도록 오픈형 형태로 구성
  - ▷ 모래사장 설치 및 강풍대비 시설물 안전성 확보, 우천대비 지붕방수처리
  - ▷ 어방민속마을 내 체험·전시·관람부스 및 각종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관리

#### 나. 시설설치 형태 및 운영분야

##### ① 수영성 설치

- 공연자가 수영성에 올라가서 이동 가능한 형태로 안전한 구조로 설치
- 수영성 아래 사람이 이동 가능한 통로 설치(아치형), 통로 내부 벽면을 활용하여 축제 주제성을 표현하도록 디자인(발주처 협의 필요)
- 외벽과 망루 등 제작 시 양질의 소재를 활용하여 사실감 있게 재현
- 망루, 대북, 현판, 전통깃발 등을 설치하여 최대한 재현
-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 ② 옥성골의 괴소문(공포체험) 설치

- 참여자가 내부에 진입하여 체험할 수 있는 미로형태 공간 구성
- 참가자가 다양한 미션을 수행 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 배치(액터동선 고려)
- 조선시대 배경에 맞는 다양한 공포컨셉의 내부 시설 · 장식 · 소품 구성
- 양질의 소재와 다양한 소품을 활용하여 사실감과 몰입도 있는 시설 설치

## ③ 민속마을구성(기와 · 초가 부스) 설치

- 경상좌수영의 수군생활상, 어민의 생활상, 수영지역의 공방을 마을내 전시 · 체험 부스로 조성하여야 하며, 기와부스와 초가부스로 20개 이상 설치
- 기와와 벗집, 대나무 등 활용 부스 제작, 일반천막 활용 실사출력 천 불가
- 부스의 마감은 나무기둥이나 흙벽, 창문, 돌담의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
- 모든 부스 앞 광목천막의 가림막 설치(처마끝으로부터 길이 2m 이상)
- 입간판 디자인 제안(타 시설물 및 관광객 밀집에도 가리지 않는 형태)
- 전시체험 프로그램(안)과 어울리도록 부스 크기 및 추가설치물 제시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부스 내부 디자인 및 소품, 물품렌탈 등 구성)
- 마을 외부 초가부스 2동 설치(평상 6개 포함)
- 부스 내 필요한 전기 · 조명 시설 설치

## ④ 기타 시설

- 마을출입구 : 수영성 북쪽을 기준으로 동 · 서 출입구, 수영성남문 재현 디자인
- 휴게공간 : 평상(민속마을 내 · 외부 총20개 이상) 및 차양막 설치,  
관람객 안전 확보하여 제작
- 전통시설물 : 민속마을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전통적인 시설물 설치
  - 안내판 : 마을안내도, 체험부스 안내판, 스템프 투어 안내판(부스별)
  - 팔각무대 : 민속마을 내 공연용 제작(EDM행사시 통제용 안전펜스 설치)
  - 외 벽 : 높이 1.2m 이하, 마을과 어울리는 초가 · 기와 · 담벽 재료로 제작
  - 나 무 : 곰솔나무 모습 재현, 3m 이상 제작, 소원지 부착 가능 형태
  - 솟 대 : 마을 외부 입구에 10개 이상 제작
  - 기 타 : 조선시대 전통어촌마을을 표현하는 우물, 포토존, 기타 오브제 등  
대행사 제안 요청
  - 기 타 : 외벽 외 부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출입구를 통해서만 이동하도록 마을 조성
  - 안녕 광안리 : 민속마을과 어울리는 전통디자인을 적용하여 구성
- 나루터 : 전통 어촌 나루터 설치, 나룻배 등 대행사 제안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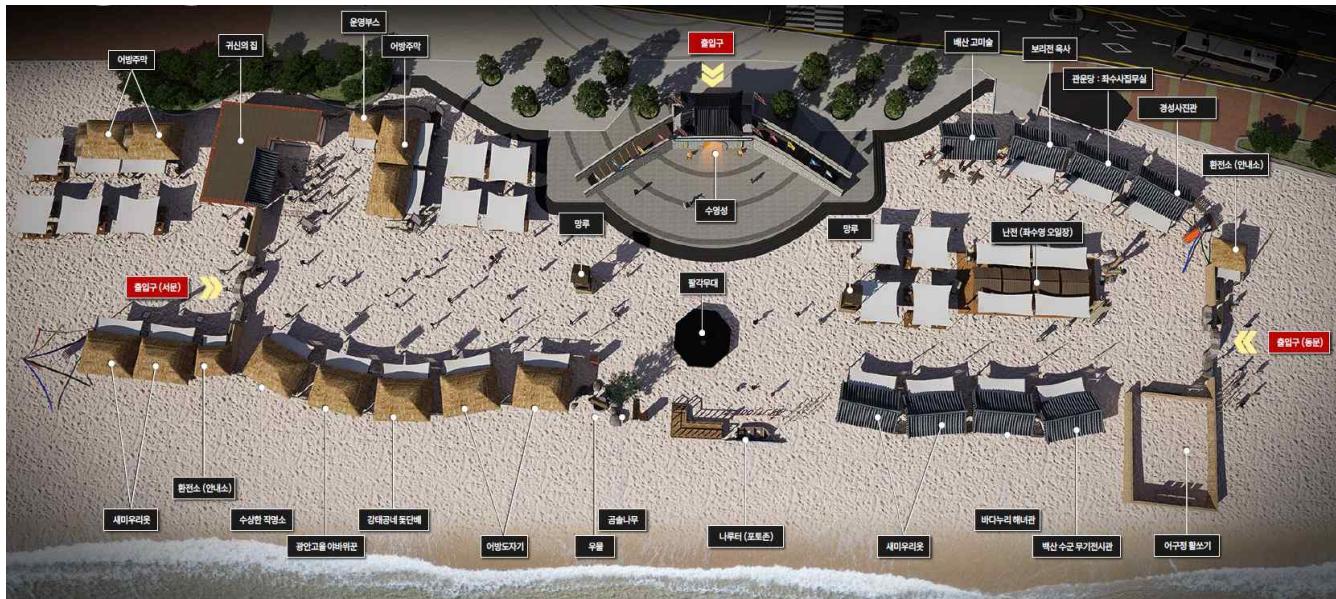
## ⑤ 어방민속마을 운영

- 어방민속마을 내 각종 체험·전시·관람 프로그램 등이 순조롭게 진행 되도록 적절한 장비와 인력 배치·운영(입점업체 참여시 확인서 청구)
  - 운영시간은 축제기간(3일) 중 9시~22시까지 상시 운영
  - 식사, 휴식 및 기타사유로 운영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대운영
- 경호요원, 운영요원, 안내요원, 경비요원 등 세부 인력 계획수립하여 운영
- 참여인력 사전교육·역할부여 철저 및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연락체계 유지
- 옥외행사 안전대책을 위한 각종 설비 및 비품확보 및 신고절차 준수 철저
- 축제 기간 중 민속마을 운영전 청소 등 정비를 완료하고, 운영시간 중에도 청소 및 정비를 위한 상시인력을 운영

## ⑥ 기타사항

- 설치장소가 모래사장 및 해변가임을 감안하여 조성기간과 운영기간 동안 월파, 우천, 강풍에 대비하여 부스 및 시설물은 견고성과 안전성을 갖추어 제작하여야 한다.
- 화재 및 안전에 대비하여 시설물 설치시기부터 행사종료일까지 안전 및 유지보수 관리자(주·야간 포함)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 제안사는 전통적인 마을 조성과 운영을 위해 창의적인 부스배치와 제안을 하여야 한다. 단, 제작 및 설치비용은 사업비 범위내에서 제안하여야 한다.
- 마을의 초가부스 및 기와부스 등의 시설물을 제작할 시에는 축제위에 제작 과정을 수시로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행사장 조성과 운영에 관한 축제위의 지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필요시 현장감독을 할 수 있다.
- 마을의 모든 시설물은 행사 2일전까지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며, 철거 및 청소는 축제 종료시부터 2주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설치 및 철거시 해수욕장 시설물 파손한 부분에 대해 대행사에서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설치부터 철거까지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 다. 어방민속마을 배치도(2025년도 기준)



## 5 과업 수행 지침

## 가.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이행에 있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법령 및 조례를 포함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행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과업의 추가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전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제반 문제점을 고려하며 필요시 이에 대한 대책과 해소방안을 발주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 처리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사업일체를 수수료만 취하고 하도급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러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계약의 해지에 따른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새로운 과업이 필요할 경우 추가로 과업 지시(서면 또는 구두)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나. 과업참여 인력 구성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과업수행책임자와 참여인력은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담당자 및 관련 인력의 근무태도 불성실, 업무능력 미비 등 계약의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인력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다. 업무협의 및 진행상황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 용역공정예정표, 과업참여인력 명단, 장비투입계획서, 보안각서 및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까지 총괄책임자를 임명하고, 안전 관리계획 및 우천시 대비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 및 용역수행계획서(공정별 일정표 포함)를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축제 기본 계획(안)보고회시 사업수행 계획보고를 하여야 한다.**(일정 협의)
- 과업수행자는 모든 업무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진행상황을 공유해야하며 단계별(착수, 중간, 완료 및 발주처에서 회의 개최 요구시 즉시) 점검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이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공정표 일정에 따른 진척사항을 2026년 행사일까지 2주에 1회 이상, 2026년 4월부터 행사일까지 주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의 방식은 직접 방문설명 또는 전산망을 이용한 방식 등 발주 기관이 지정한 방식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전체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2026년 7월 16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 결과보고서에는 사업비 정산보고서, 사업수행 촬영 사진 및 영상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라. 지도 및 감독

- 발주기관은 이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 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과업수행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다만 과업수행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 마. 계약의 해지 및 과업수행 중단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 과업수행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 축제를 개최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기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안전관리 상 문제가 될 경우, 기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의 합의에 의하여 용역수행의 중단을 지시할 수 있다.
- 과업수행 도중에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취소된 날을 기준으로 과업완료 성과물에 따라 정산하되, 계약취소로 인하여 과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정 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발주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야 한다.

## 바. 대금지급

-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정한 계약금액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비 정산시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업비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사업비 청구시 발주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서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과업수행자의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민원, 각종 피해 및 재산손실 등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과업수행자 책임하에 해결하며 상해보험 및 피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별도의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고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은 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은행입금증 등의 방법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현금지출을 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비를 발주기관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인건비는 타 비용에 우선 지출하여야 하고, 인건비 지출시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등을 하고 세무관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대금지급은 과업이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가 제출이 완료되고 과업수행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하되 수정·보완 등이 소요되는 사업경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 대금지급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휴일제외)에 지급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또는 발주기관이 정산서 등의 검토결과 사업내용이 부실하거나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자에게 지급한 사업비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최종 사업비에서 과다 지급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사업비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과다 지급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 사. 지적재산권

-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 생성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제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아.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일체 누설할 수 없다.
- 발주기관이 공개에 동의한 사항 외 일체의 자료나 정보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는 보안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과업수행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자. 안전사고의 책임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에 대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행사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 차.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시 제출한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집행하되, 실제 집행내역 및 금액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 시스템 설치 및 운영 등 관리의무를 태만하여 출연자, 진행자, 임대장비 등에 대하여 사고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과업 이행 범위에 위반하거나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현저한 해를 끼칠 경우 3년간 수영구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에 일절 참여를 제한한다.
- 과업폐기물은 즉각 소각 처리하여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